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66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함)의 장에게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등을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4(주거 자립지원) 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청

	<u>소년복지시설을</u> <u>폐소하는</u> <u>가정</u> <u>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u> <u>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u> <u>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u> <u>있다.</u>
--	--

현행법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자립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이 복지시설²⁾ 폐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³⁾ 지급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폐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5)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⁶⁾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3)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 자립지원수당(50만원, 최대 5년간 매월 지원) 확대 지원

-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10)까지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8) 청년	5 퍼센트 범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제31조에 따른 <u>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 으로서 <u>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u>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복지시설의 장이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복지시설의 장의 가정 밖 청소년 대리과 관련(안 제32조의4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⁸⁾시 입주자 모집

-
-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계한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¹⁰⁾을 보면, 총 공급신청 신청인 중 인터넷 접수자가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인터넷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9) 실무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위임장 서식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일부 지방공사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음.

10) <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말) >
(단위: 신청인 수, %)

연번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급세대수	모집기간	인터넷	방문접수	총신청인 수
1	과천치식정보타운 S-10BL	통합공공임대주택	605	'22.02.15.-02.18.	17,936 (93.3)	1,282 (6.7)	19,218 (100)
2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575	'22.02.15.-02.18.	11,888 (93.9)	777 (6.1)	12,665 (100)
3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1BL	통합공공임대주택	200	'24.04.11.-04.15.	181 (100)	-	181 (100)
4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2BL	통합공공임대주택	216	'24.04.11.-04.15.	1,348 (99.6)	6 (0.4)	1,354 (100)
5	과주운정3 A24	국민임대주택	806	'24.05.20.-05.24.	1,510 (86.6)	233 (13.4)	1,743 (100)
6	인천검단 AA35-2	국민임대주택	593	'24.06.25.-06.28.	1,627 (96.3)	62 (3.7)	1,689 (100)
7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BL	통합공공임대주택	159	'24.08.09.-08.13.	181 (100)	-	181 (100)
8	서귀포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37	'24.09.11.-09.12.	605 (98.4)	10 (1.6)	615 (100)
9	평택고덕 국제화계획 A-58	국민임대주택	378	'25.01.13.-01.17.	2,899 (96.7)	100 (3.3)	2,999 (100)

주1: 가장 최근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¹¹⁾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타인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면서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지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절차 전부를 대리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신청과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퇴소를 앞둔 가정 밖 청소년은 복지시설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바¹²⁾, 복지시설의 장은 퇴소를 앞둔 가정 밖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업무를 수행¹³⁾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온라인 신청¹⁴⁾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함.¹⁵⁾

11) 본인인증절차는 인터넷상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12)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가장 최근 이용한(또는 입소해 있는) 시설의 장에게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후, 최종시설의 장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를 발급하고 추천공문과 함께 원본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함. 지자체는 시·도별 취합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명단과 입소기간 확인서를 국토부(LH)로 제출

1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신청 → (청소년복지시설) 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 (지자체·여가부) 대상자 취합 및 명단 통보 → (임대주택 사업자) 심사 및 입주지원

14)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신청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추천서 등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전세·매입·건설) 신청자격이 있는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연계¹⁶⁾하고 있다고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¹⁷⁾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의사존중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등을 대리함에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¹⁸⁾의 입주자 자격 확인은 국토교통

서류 발급 → (임대주택 사업자) 심사 및 입주지원

- 2025년 하반기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복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신청(가정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전세·매입·건설) 신청자격이 있는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청 접수 후 지원
 - (전세·매입 임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무주택자
 - (건설 임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임대 유형	지원 사항
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보증금(없음) + 월 임대료(22세까지 무료,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이후 약10~20만원) + 관리비 · (청년)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약10~20만원) + 관리비
매입임대	·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약10~20만원) + 관리비
건설임대	·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 + 관리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복지시설의 장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거나, 필요하면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음.

다음,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업무 의뢰 관련(안 제32조의4제2항)

개정안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장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의 장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약자법」 19)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 밖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제22조²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복지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지원시설과 연계시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으며, 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의 장의 의뢰가 없어도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복지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위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32조의4제1항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종 계약자가 청소년 본인인 점과 향후 공공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전환시 타인의 대리가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의 장이 청소년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임.

개정안 제32조의4제2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복지시설의 장이 주거복지센터로만 가정 밖 청소년을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제32조의4제1항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도 복지시설 퇴소 예정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자립 지원을 위해 우선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제3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접수의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32조의4제1항의 개정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 제32조의4제2항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법」은 고령자,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고, 안 제32조의4제2항에 따르면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약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문제·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거지원센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²¹⁾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은 불법 양도·전대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성년일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청소년복지시설협회는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준비없이 복지시설의 장이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1)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중 주거지원(LH공공임대주택)²²⁾

가. 신청 자격

☐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무주택자(이하 ‘시설퇴소청소년’)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공통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해당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일 필요 없음

○ 전세·매입임대 : 18세 이상, 미혼

* 24세에 시설을 퇴소한 경우 29세까지 신청 가능

☐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 건설임대(통합공공임대 최초공급/국민, 행복, 영구, 통합공공임대 재공급 우선지원)

- 통합공공임대 최초공급 시에만 미혼, 소득 요건 필요

- '25.3.31.부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재공급 주택 우선공급 대상 중 가정 밖 청소년 입주요건을 복지시설 이용자로 완화(이용 기간 삭제)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 → (현행)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 각 시설장은 신청가능한 대상자(입소중 또는 기 퇴소한 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의사를 확인

나. 신청 절차

※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가장 최근 이용한(또는 현재 입소해 있는) 시설의 장(이하 ‘최종 시설’)의 협조로 지자체 및 여가부를 경유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입소기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 완료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 건설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방식이 있으며, 공고방식과 공급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 시설퇴소청소년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등 절차 확인 불필요

22)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 490~491면

- 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최종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붙임1 서식)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붙임2~3 서식) 제출
 - 전세·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최초공급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② 최종시설장*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안전망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이하 ‘입·퇴소확인서’)를 발급**하고 추천 공문과 함께 원본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붙임4 추천양식 참조)
 - * 최종시설의 장은 신청자에게 임대주택지원의 신청 및 진행과정을 안내
 - ** 최종시설의 장은 필요 시 청소년이 이전에 이용한 시설(이하 ‘기존시설’)로부터 입소기간 등 확인 후 입·퇴소확인서에 포함
 - 입소자가 시설별로 다른 개인정보(이름 등)를 기재할 경우 안전망시스템을 통한 기존시설 입소 이력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 기존시설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상담일지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입소기간 등 확인 협조
 - *** 지자체는 시·도별 취합한 사항을 수시로 여가부에 제출(서류 원본은 관할지자체 보관, 사본 첨부)
- ③ 여가부는 명단과 입소기간 확인서를 국토부(LH)로 제출
 - * (소년소녀가정, 매입·전세임대)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LH 매입전세임대 사업처
 - (건설임대)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LH 건설임대사업처
- ④ LH는 신청자가 원하는 임대 주택을 안내하고 계약과정을 지원, 계약완료시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⑤ 여가부는 통보받은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최종시설에 통보